

의안번호	2218891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C254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1조의3 (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)	(제1항)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노인용 쇼핑카트,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37조 (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)	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7조의2 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노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, 노후 경로당의 개수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의3 (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7조 (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)	
3	안 제37조의2 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31조의3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, 그 외 시설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31조의3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하거나,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37조제4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로당을 설치할 때, 개정안에 따른 접근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37조의2제3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, 노후 경로당의 개수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31조의3제3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확대될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(실버카)를 지원하고 있으며,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를 지원하는 수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음
 - 또한, 개정안 시행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할 경로당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역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현재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,

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통해 경로당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